

2019년 7월

세계로 뻗는 품격 높은 한국인 교육

# 전·편입생 입학 전형 요강



2019. 6.



대원외국어고등학교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2019년 7월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전·편입학 전형 요강

## 1 모집 학과 및 모집 인원

학년	전형 구분		전 공 어 과 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합 계
1학년	정원내	사회통합 전형	1			1	2	3	7
		기회균등 사회다양성	2	1	3			1	7
		일반전형				1			1
	정원외	외국인전형							16
2학년	정원내	사회통합 전형	1	1			1		3
		기회균등 사회다양성	1	1	1		2	2	7
		일반전형	1		1			1	3
	정원외	외국인전형							14
3학년	정원내	일반전형		2	2				4

- ※ 학과별로 지원 후 선발 모집함(복수 학과 지원 금지)
- ※ 모든 지원자는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과별 최대 모집정원을 정함 (2학년 프랑스어과 사회다양성전형 다자녀가정 자녀 모집 정원 없음)
- ※ 모집 공지 기간 중 추가 결원이 발생하면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추가 공지 예정)
- ※ 전·편입학 합격자 발표 이후 2019년 9월 1일 이전에 결원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8월 하순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음
- ※ 2019년 7월 전·편입요강 및 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기본으로 함

## 2 지원 자격

### 가.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1)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①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해당 학년 재학생  
(단, 2학년 1학기까지만 전입 지원 가능하며, 동일 계열인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지원 불가)
- ②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시·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해당 학년 재학생  
(단, 2학년 1학기까지만 전입지원 가능)

#### 2) 해외 귀국 학생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해외 귀국 학생

학 년	학기 이수 기준	비 고
1학년	- 국내외 총 18학기 이상 이수	중복학기는 별도의 2개 학기로 인정
2학년	- 국내외 총 20학기 이상 이수	
3학년	- 국내외 총 22학기 이상 이수	

- ※ 1년 3학기제의 경우 2학기 수료를 1학기로, 3학기 수료를 2학기로 산정함
- ※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지원 이전 교무입학부에 전화 문의 요망
- ※ 외국인 전형 대상자는 해외 자국에서도 지원 가능(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바람)

나. 전형 구분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원 내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4)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기준 중위소득 50% 이하</td> <td>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b>참고자료 1</b>의 &lt;표1&gt;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td> </tr> </table> 5)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기준 중위소득 60% 이하</td> <td>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b>참고자료 1</b>의 &lt;표2&gt;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td> </tr> </table> 6)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7)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b>참고자료 1</b> 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b>참고자료 1</b> 의 <표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b>참고자료 1</b> 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b>참고자료 1</b> 의 <표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사회 통합 전형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6)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7) 장애인(1급~3급)의 자녀 8)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사회 다양성 전형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2)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3)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						
외국인전형	·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으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자격 부여

※ 기회균등전형 입학자는 입학 후 매년 자격심사를 다시 받아 당해 학비지원 여부를 결정함

### 3

## 제출 서류

### 가. 공통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전·편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날인 등 도장, 서명 필하여 제출
자기소개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및 감점 처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li> <li>■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li> <li>■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li> <li>■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li> </ul> </div> - 상기 배제사항에 대한 간접적·우회적 기재 모두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후 서류 접수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가 각각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부·모 각각 1부씩 제출 <b>(외국인전형 제외)</b>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b>(외국인 전형 제외)</b>

-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를 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함(**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 영어 등 각종 외국어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수료증 등은 제출하지 않음

### 나.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1) 중학교 생활기록부Ⅱ, 고등학교 생활기록부Ⅱ 각 1부
  - ※ 학교생활기록부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으로 날인 및 간인하여 제출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에 각각 해당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또는 담당 장학사의 확인 직인을 받아 제출

### 다. 해외 귀국 학생

- 1)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증명서 사본 1부
- 2) 해외 전(全)학년 성적 증명서 사본 1부  
(단, 최근 4개 학기 성적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국내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 3) 해외학교 재학(졸업)증명서 사본 1부
- 4) 출입국 사실 확인서 사본 1부
  - ※ 해외 전(全)학년 성적증명서와 해외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는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함
  - ※ 단,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하고 확인서(「2019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전·편입 귀국 학생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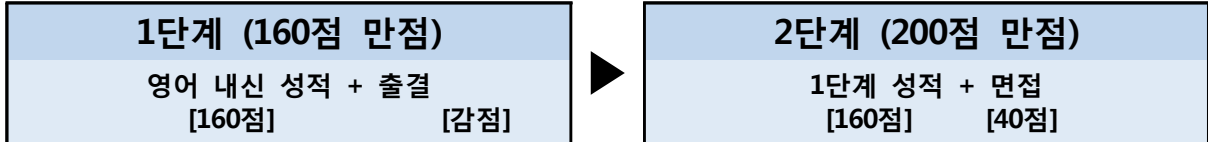
라. 전·편입학 전형 지원자 추가 제출 서류

전형 구분		제 출 서 류			
일반전형		추가 서류 없음			
사회통합 공통서류		고입 사회통합전형·보훈자자녀전형·고입특례입학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 전·편입학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각 1부 (본교 양식)		본교양식	
사회 통합 전형	기회 균등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학교) 1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 모두제출) ※ 등본상 가족 구성원 분리 시에도 모두 제출	지역건강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li> <li>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li> <li>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li> </ul>	
			직장건강 보험료 혼합 (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li> <li>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li> <li>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li> <li>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li> <li>-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li> <li>-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li> </ul>	
		학교장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장 추천서 1부</li> <li>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li> <li>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li> <li>-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판결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li> <li>-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li> <li>-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li> </ul>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관할 보훈지청		
사회 다양 성 전형	사회다양성 공통 (부·모 모두제출) ※ 등본상 가족 구성원 분리시에도 모두 제출	지역건강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li> <li>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li> <li>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li> </ul>		
		직장건강 보험료 혼합 (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li> <li>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li> <li>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li> <li>-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li> <li>-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li> </ul>		

사회통합전형	사회다양성전형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부 또는 모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사본 또는 귀화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도서벽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1부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교원·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한부모가정자녀	•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자녀'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부·모 모두 제출
		다자녀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 지원 학부모 확인서 1부
		환경미화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정원의외	외국인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및 여권 사본 각 1부(부모 포함)</li> <li>○ 전(중)과정(ex. 초, 중 or 초, 중, 고) 성적증명서 1부</li> <li>○ 기타 서류(ex. 비자 준비 서류 등)는 교무입학부로 문의</li> </ul>	

## 4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절차 및 배점



1) 1단계 : 영어 내신 성적(160점 만점) + 출결(감점)  
 (정원의 2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 가)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영어 내신 성적 = 최근 4개 학기 영어 교과성적 성취도 수준별 부여점수의 합**

- ※ 내신성적은 최근 4개 학기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을 활용(학기별 40점)
-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최근 학기부터 국어, 사회 순서로 4학기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
- ※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하며, 해외 학교 출신자의 경우 최근 학기부터 사회 관련 교과(social studies, geography 등)와 외국어 관련 교과(spanish 등) 순서로 4학기 성취도 수준을 반영
- ※ 1단계 최종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함

#### 나)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점수	40	36	32	28	24

**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 성적 산출 방법**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 국어, 사회 과목의 원점수를 아래의 조건표에 의해 성취도 수준을 반영

원점수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성취도 수준	A	B	C	D

**라) 출결 상황 산출 방식(최근 3개년 반영)**

(1) 국내 학교 재학 학기

**출결 = -[무단결석일수]**

- ①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 ② 출결 점수 최대 감점은 10점으로 함

(2) 해외 학교 재학 학기

- ① 출결 성적이 없는 자의 출결 점수 산출 : 최인접 학기 영어 과목 성취도 수준으로 반영

성취도 수준	A	B	C	D	E
출결점수	0점	0점	-1점	-2점	-3점

**※ 해외귀국자 서류 관련 사항**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본교에서 원본대조필한 후 사본 제출 가능(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단,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하고 **확인서**를 제출함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2)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만점) + 면접(40점 만점)'으로 선발**

가)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면접 점수 산출 방식

**면접 = 자기주도학습 (공과 끼 영역)(30점) + 인성영역(10점)**  
 ※ 면접을 위한 사전단계인 서류평가도 면접점수에 포함됨

나) 영역별 평가 요소 및 배점

전형 구분	1단계	2단계	총 점
	영어 내신 성적 + 출결 성적	면접	
모든 전형	160	40	200

다)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영역별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배점	관련 서류
자기주도학습영역 (꿈과 끼 영역)	<b>■ 자기주도학습과정</b>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동아리 활동 및 진로체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20	자기소개서 학교 생활기록부Ⅱ
	<b>■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과 진로계획</b> 학교특성과 연계하여 본교 및 희망 전공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된 계기와 준비과정,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입학 후 활동계획, 본교 졸업 후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진로계획 및 실현방법	10	
인성영역	<b>■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b>  <b>※ 핵심인성요소</b> 핵심인성요소는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10	

※ 자기소개서는 띄어쓰기 제외 1,500자 이내로 작성

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자기주도학습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출력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본교에 제출
- (2)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3) 자기소개서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 시 0점 처리하며,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 등 조치)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 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OO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 5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공 지	2019.06.28.(금) ~ 2019.07.10.(수)	홈페이지	○ 공지사항란 참조
서류 제출	2019.07.08.(월) ~ 07.10.(수) 16:00까지	용마관 2층 교무입학부	○ 접수시간 : 09:00 ~ 16:00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서류 평가 및 1단계 합격자 발표	2019.07.11.(목)	개별 통지	
2단계 면접	2019.07.12.(금)	본 교	○ 면접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19.07.15.(월)	개별 통지	
합격자 소집 및 등록	2019.07.17.(수)	개별 통지	○ 등록 및 학사일정 등 안내

## 6 합격자 사정 방법 및 동점자 사정 기준

- ① 1단계 성적(영어 내신성적+출결) 점수, 면접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
- ②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최근 학기부터 국어, 사회 순서로 4학기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
  - ※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하며, 해외 학교 출신자의 경우 최근 학기부터 사회 관련 교과(social studies, geography 등)와 외국어 관련 교과(spanish 등) 순서로 4학기 성취도 수준을 반영
  - ※ 1단계 최종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
- ③ 2단계 동점자는 면접점수 총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영역 점수 ⇨ 인성영역 점수 ⇨ 지원 동기 및 활동계획과 진로계획 점수 ⇨ 영어 성적 점수(최인접 학기부터 4학기 순서대로 반영) ⇨ 출결점수 감점 적은 순으로 선발

## 7 합격자 배제 조건

- 가.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결과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원자
- 나. 입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한 지원자  
(합격자 발표 후에도 위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함)

## 8 사회통합전형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학생 교육비 지원 및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 가. 교육비 지원 내용

- 지원 근거 :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참여협력담당관-829, 2018.01.26.)  
\*교육비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 학년도 말까지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 ※ 사회통합전형 입학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이 아님 (교육비 지원 조사 결과에 따라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 지원 내용

- 법정저소득자격 보유자[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는 법정 자격이 있는 동안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일반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지원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없음
- 학교운영지원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청에서 일반학교 수준까지 지원(차액본인부담)
  -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지원하지 않음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없음
-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자에 한하여 급식비 학교장 추천 지원 있음
-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등의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별 운영 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



## 교육비 지원 유의 사항

1. 2019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19년에 시행되는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2.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 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까지만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함
3. 참고 :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계획 안내 (참여협력담당관-829, 2018.01.26.)

## ❖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 교육비 지원 사항

### 🌿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

▶ 법정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지원기준		학비		기타수익자 부담경비 (소규모테마형교육여 행비수련활동비 등)	비고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	기초생활수급자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	○	○	
기회균등 전형 입학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	일반고 수준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	-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 입학		-	-	-	법정 저소득자격 없는 학생

### 🌿 학교운영지원비 : 일반고 수준 지원(차액본인부담)

### 🌿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항목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 일반학교와 동일
- ▶ 교복비 : 300,000원 이내, 중·고 신입생(1학년)
- ▶ 앨범비 : 45,000원 이내, 중·고 예비 졸업생(3학년)
- ▶ 기숙사비 : 순수 기숙사비 50% + 조·석식비 전액

###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 일반 학교와 지원 기준 동일

## 나.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진로·상담	전문 상담교사를 통한 상담활동 운영 진로상담 교사를 통한 진학지도 컨설팅 운영
학교 생활 적응	졸업생 멘토링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및 진학 컨설팅 도움
교과 향상	주요교과 질문 교실 운영 (국어·영어·수학·과학)
비교과 나눔	창의·인성 융합캠프(인문학, 리더십, 인지과학) 지원 품격교육 및 봉사활동 지원
기타 교육비 또는 생활비	필요한 경우 대원 학원 내 행복함께나누는재단 협의를 거쳐 지원 예정

※ 위 프로그램은 2019학년도에 한해 실시 예정인 계획이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인원은 제한 될 수 있음

## 9

## 기타 유의 사항

- 가. 지원은 학과별로(복수 학과 지원 금지) 하며,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외국인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나.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입학전형 및 전형 종료 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본교에서 포괄적으로 활용됨. 따라서 지원자는 입학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다. 입학전형에 관련된 개인정보 및 자료는 본교의 입학업무에만 활용되고, 입학사정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본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음
- 라. 해외 귀국 학생의 경우 서류 제출 시 본교 교무·입학부에서 이수 학기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필요하함
- 마. 해외 귀국 학생의 경우 해외 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사실증명서는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재외 공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입증하는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함 (단,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제출)
- 바. 학력 인정이 되지 않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 원서 및 제출 서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며, **전형료는 27,000원으로 원서 제출 시 납부**
- 아.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음
- 자.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음(제1외국어, 선택과목 등)
- 차. 모집 공지 기간 중 추가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집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카. 모집 공지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결원이 있을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충원 여부에 대한 의결 과정을 거쳐 지원자의 성적 순위에 의해 추가로 충원할 수 있으며 합격자 미등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타. 전·편입학 합격자 발표 이후 2019년 9월 1일 이전에 결원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8월 하순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음
- 파.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하. 본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Intelligence·Humanity·Courage**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www.dwfl.hs.kr](http://www.dwfl.hs.kr)**

우049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6(중곡 4동)

·Telephone : (02) 2204-1513~1515 ·Fax : (02) 2204-1544

**참고 자료 1**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이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1. 2019 사회통합전형 지원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1733, 2018.03.26.)
2. 소득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시 세무과-7194, 2018.03.30.)

**【표1】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2018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표2】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2018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 기회균등전형 지원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
  - ‘직장가입자’ 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재산세 납입금을 추가로 확인 **참고자료 3** 참고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이혼한 경우에도 동일)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6만2천원)
  -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추가 재산세 납입금 확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8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1,508,329	47,326	20,824	48,017
2분위	2,245,256	70,459	58,018	71,374
3분위	2,898,038	90,485	93,923	91,272
4분위	3,444,822	108,042	118,953	109,139
5분위	4,014,804	125,376	143,229	127,023
6분위	4,596,361	143,379	163,438	145,467
7분위	5,286,438	165,762	186,928	168,404
8분위	6,213,497	195,224	217,535	198,786
9분위	7,824,171	242,183	266,785	249,924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기구 비율”/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7년 1분기~4분기 기준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8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 (연간)**
1분위	1,508,329	150,832,900	90,499,740	105,740
2분위	2,245,256	224,525,600	134,715,360	172,070
3분위	2,898,038	289,803,800	173,882,280	254,700
4분위	3,444,822	344,482,200	206,689,320	336,720
5분위	4,014,804	401,480,400	240,888,240	422,220
6분위	4,596,361	459,636,100	275,781,660	509,450
7분위	5,286,438	528,643,800	317,186,280	638,740
8분위	6,213,497	621,349,700	372,809,820	861,230
9분위	7,824,171	782,417,100	469,450,260	1,247,800

\* 재산의 1%를 월 소득으로 계산한 교육부 학교정책과(2013.04.19.)에 근거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 참고 자료 4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이하)적용 기준

■ 근거 : 2019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1733, 2018.03.26.)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참고자료 3** 참고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 ‘직장 가입자’ 및 ‘혼합’ 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2018년 기준, 단위 : (월))

분위 구분(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분위	5,286,438	165,762	186,928	168,404
8분위	6,213,497	195,224	217,535	198,786
9분위	7,824,171	242,183	266,785	249,924

### 【소득 8분위 재산세 납입금 기준】 (2018년 기준, 단위 : (월))

분위 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7분위	5,286,438	528,643,800	317,186,280	638,740
8분위	6,213,497	621,349,700	372,809,820	861,230
9분위	7,824,171	782,417,100	469,450,260	1,247,800